

제424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26. 1. 26. ~ 2.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제 424회 임시회

(2026. 1. 26. ~ 2. 6.)

# 제424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424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그간 준비했던 것들을 실행하고 완성해 나가는 결실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으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과 퍼지컬AI 실증사업 등 미래 먹거리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도전의 결실을 도민의 삶에 곳곳 완전히 꽃피우고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법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례의 추가 발굴과 동시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입법권 확장을 위한 조례 정비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인구위기 대응, 농산어촌 활성화, 전북혁신도시 시즌2 준비, 새만금 사업 정상화, 주력산업의 신기술 전환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굳건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전북 RE100 산업단지 조성 과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는 우리 지역의 미래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핵심전략입니다.

의회는 기반시설 점검 과 제도적 지원을 꼼꼼히 챙기고 광역철도망 구축, GTX 연계 등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올해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감사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습니다.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원칙을 지키며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는 새해를 맞아 도전경성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라는 방향 아래 여민유지의 포부를 밝히며 3대 도전과 7대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전주하계올림픽 반드시 유치, 피지컬AI 생태계 기반 조성,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이라는 3대 도전을 통해 국가역량을 전북에 집중시키고 지역발전의 시계를 앞당기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북형 통합 돌봄망 완성, 20조 투자유치, K-컬처 경제시대 개막,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주력산업의 똑똑한 진화와 에너지 대전환,

스마트청년 창업농 수도 도약, 합계 출산율 1명 회복이라는 7대 변화로 도민 삶 전반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도정 비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조하되 도민 중심의 균형 잡힌 추진을 위해 빈틈없는 점검과 책임 있는 견제를 병행하겠습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은 ‘한 걸음 더! 전북교육, 한국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2025년 현장에서 검증된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의 성과를 출발선으로 삼아 흐름을 더욱 단단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교육의 기본교육 전환, 민주·생태·역사교육 강화, 학생 마음건강 상시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핵심과제에 대한 책임 있는 추진 의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도서, 인문교육, 수업혁신, 교과학습 강화, 특성화고 취업,

교육활동 보호, 다문화 교육, 유아발달, 방과후 지원 등 주요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도내 8개 학교가 폐교되는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의 경고음이 더 커지는 가운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살아 숨 쉬는  
교육생태계를 지키는 일에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흔들림 없이 성장하는 안정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의 2026년도 시책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력할 사안에는 과감히 협력하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감시와 견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도민 180만의 시간과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분일초, 하루하루가 곧 도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2026년 도민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

# 목 차

## 제424회 임시회

###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7
2. 회기 및 운영 .....	7
3. 의 사 일 정 .....	8

###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13
2. 처 리 현 황 .....	14

###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42
2. 처 리 현 황 .....	42
3. 위원회별 처리현황 .....	43

###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2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44
2. 202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	44
3. 제12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	45
4.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	45

# I. 집회 및 의사일정

##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26. 1. 19.(월)
- 집회 일자 : 2026. 1. 26.(월) 14:00
- 집회 사유
  - 2026년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 시책방향 청취
  -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 2026년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
  - 조례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

## 2. 회기 및 운영(제12대 후반기)

- 회 기 : 2026. 1. 26. ~ 2. 6.(12일간, 2026년 : 12일, 총누계 467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2일(연 누계 : 2, 총 누계 96)
  - 상임·특별위원회

구 분	계	의회운영	기획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지방	교육	특별
제424회 임시회	24	1	5	5	4	5	4	0
2026 년도	24	1	5	5	4	5	4	0
총 누 계	312	18	59	56	51	56	46	26

### 3. 의사일정

####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p>1.26.(월) 14:00</p>	<p><b>〈 제1차 본회의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회 식</li> <li>○ 간부소개</li> <li>○ 5분 자유발언(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이재 의원, 김성수 의원, 박정희 의원, 강태창 의원, 오현숙 의원, 임종명 의원, 김정기 의원, 김슬지 의원, 권요안 의원</li> </ul> </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긴급현안질문의 건</li> <li>2.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li> <li>3.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li> <li>4.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li> <li>5.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li> <li>6.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 촉구 결의안</li> <li>7.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촉구 건의안</li> <li>8. 석면건축물 철거 전 위해성 관리·유지보수 예산 국비 지원 및 소량 폐석면 처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li> <li>9.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 결의안</li> <li>10. 본회의 휴회의 건</li> </ol>	
<p>2.6.(금) 14:00</p>	<p><b>〈 제2차 본회의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분 자유발언(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용근 의원, 전용태 의원, 김명지 의원, 오은미 의원, 서난이 의원, 김희수 의원, 이수진 의원, 김동구 의원</li> </ul> </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지사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li> <li>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3.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li> <li>4.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li> <li>5.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li> <li>6.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7.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li> </ol>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li> <li>9.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li> <li>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li> <li>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li> <li>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4.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li> <li>15. ‘청곱창김’ 수산물 원료 인정 및 산업화 보장 촉구 건의안</li> <li>16.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촉구 건의안</li> <li>17.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li> <li>18.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li> <li>19.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li> <li>20.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li> <li>2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li> </ul>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원회	1. 26.(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li> <li>○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li> <li>○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청취 - 의회사무처, 정책협력관</li> </ul>	
기획행정 위원회	1. 26.(월) 본회의 종료 직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li> <li>○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li> <li>○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li> <li>○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li> </ul>	
	1. 27.(화)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대변인,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li> </ul>	
	1. 28.(수)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개발원</li> </ul>	
	1. 29.(목)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 자치경찰위원회</li> </ul>	
	1. 30.(금) 1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의정활동 - 전북연구원</li> </ul>	
농업복지 환경 위원회	1. 26.(월) 16: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li> <li>○ 환경산림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ul>	
	1. 27.(화)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복지여성보건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여성가족재단</li> </ul>	
	1. 28.(수)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업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li> </ul>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 29.(목) 10:00	4	○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1. 30.(금) 10:00	5	○ 현지의정활동 - 축산연구소	
경제산업 건설 위원회	1. 27.(화) 10:00	1	○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기업유치지원실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전북신용보증재단	
	1. 28.(수) 10:00	2	○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미래첨단산업국 - 전북테크노파크 - 자동차융합기술원 - 에코융합섬유연구원	
	1. 29.(목) 10:00	3	○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새만금해양수산국 - 건설교통국 - 교통문화연수원 - 전북개발공사 ○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2. 6.(금) 11:30	4	○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안전 소방 위원회	1. 26.(월) 16:00	1	○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 의안심사 -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	
	1. 27.(화) 10:00	2	○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도민안전실 - 소방본부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 28.(수)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li> <li>- 문화체육관광국</li> <li>-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li> <li>-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li> <li>-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li> <li>- 한국소리문화의 전당</li> </ul>	
	1. 29.(목)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li> <li>-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li> <li>-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li> <li>- 동학농민혁명기념관</li> </ul>	
	1. 30.(금) 1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의정활동</li> <li>-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 융합 진흥원</li> </ul>	
교 육 위 원 회	1. 27.(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질의 (부교육감)</li> <li>○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li> <li>- 정책국, 대변인</li> </ul>	
	1. 28.(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li> <li>- 행정국, 감사관</li> <li>○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li> <li>-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li> </ul>	
	1. 29.(목)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li> <li>- 직속기관(6개 교육문화관 + 7개 원)</li> <li>○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li> <li>- 14개 시·군 교육지원청</li> </ul>	
	1. 30.(금)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심사 : 조례안 등</li> <li>○ 현지의정활동(예정)</li> <li>- 26년 3월 개교 준비교(원)</li> </ul>	

## Ⅱ. 의안접수 및 처리

### 1. 접수현황

####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424회 (2026. 2. 6.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23	8	5	3	0	0	0	2	0	12	1	
	누 계	1849	885	434	441	10	7	0	464	74	316	103	
의 회	소계	금회	18	5	4	1					12	1	
		누계	1123	701	409	286	6	7	0	6	0	316	93
	의원	금회	18	5	4	1					12	1	
		누계	1073	684	406	273	5	0	0	0	313	76	
	위원회	금회											
		누계	50	17	3	13	1	7	0	6	0	3	17
도지사	금 회	4	2	1	1				2				
	누 계	557	111	16	95	0	0	0	410	30	0	6	
교육감	금 회	1	1		1								
	누 계	169	73	9	60	4	0	0	48	44	0	4	

## 2. 처리현황

### ○ 총 괄

제424회 (2026. 2. 6.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23	22	21	1	0	0	0	0	1
	누계	1849	1830	1673	104	0	26	0	26	25
조 례 안	소계	금회	8	8	7	1				
		누계	885	875	794	55	0	6	0	18
	의회	금회	5	5	4	1				
		누계	701	692	633	43	0	0	0	14
	도지사	금회	2	2	2					
		누계	111	111	96	8	0	3	0	4
	교육감	금회	1	1	1					
		누계	73	72	65	4	0	3	0	0
규 칙 안	금회									
	누계	7	7	7	0	0	0	0	0	0
규 정 안	금회									
	누계	0	0							0
승인동의안	금회	2	2	2						
	누계	463	462	408	28	0	19	0	7	1
예산결산안	금회									
	누계	75	75	56	19	0	0	0	0	0
건의결의안	금회	12	11	11						1
	누계	316	309	306	2	0	0	0	1	11
기 타 의 안	금회	1	1	1						
	누계	103	102	102	0	0	1	0	0	0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 회	11	8	0	0	2	0	1	0	11	10	1	0	0	0	0
	누 계	1446	873	0	0	455	74	32	12	1428	1265	106	26	23	0	23
의회 운영 위 원 회	금 회	1						1		1	1					
	누 계	53	22	0	0	0	0	31	0	45	38	5	0	0	0	7
기획 행정 위 원 회	금 회	3	2			1				3	3					
	누 계	266	190	0	0	74	0	0	2	264	246	10	0	7	0	4
농업 복지 환 경 위 원 회	금 회	2	2							2	2					
	누 계	259	189	0	0	69	0	1	0	257	240	2	3	11	0	2
경제 산업 건 설 위 원 회	금 회															
	누 계	371	161	0	0	206	0	0	4	370	322	27	16	3	0	3
문화 안전 소 방 위 원 회	금 회	1				1				1	1					
	누 계	178	118	0	0	60	0	0	0	176	160	11	3	2	0	2
교 육 위 원 회	금 회	4	4							4	3	1				
	누 계	244	194	0	0	46	0	0	4	241	206	30	3	0	0	5
특 별 위 원 회	금 회															
	누 계	76	0	0	0	0	74	0	2	76	54	21	1	0	0	0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12					11	1	12	12					
	누계	408	17	7	0	6	0	281	94	408	406	4	1	1	0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24	9			3		11	1	24	22	2			
	누계	1774	849	8	0	437	74	303	103	1792	1666	107	14	5	0

\* 위원회 수정안 가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강동화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6. 1.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6. 1. 19.
	의 결 일 자	2026. 1.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6. 2. 27.		공 포 번 호	제5964호

□ 제안이유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라.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안 제9조)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6. 1. 1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6. 1. 19.
	의 결 일 자	2026. 1. 2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6. 2. 27.		공 포 번 호	제5962호

□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직급 상향 및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 구

- 1) 본 청 : 3실 · 10국 · 1단 · 1본부 69과 284팀(변동없음)
- 2) 의 회 : 1처 4담당관 9전문위원(변동없음)
- 3) 직 속 : 3원 15서 1관
  - 가) 보건환경연구원 : 1원 1과 3부 → 1원 1과 4부(+1부)
- 4) 사업소 : 11사업소(변동없음)
- 5) 합의제행정기관 : 2국 2과 12팀(변동없음)

나. 정 원 : 5,534명(변동없음)

다. 주요 변경내용

- 1) 의회사무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총무담당관 직급 상향(4급 → 3·4급)
- 2)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분야 전문화를 통한 원활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환경연구부를 대기환경연구부와 물환경연구부로 분부

##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6. 1. 12.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6. 1. 19.
	의 결 일 자	2026. 1. 2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6. 2. 27.		공 포 번 호	제5959호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재단 설립의 목적, 설립·운영, 기능(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정관, 임원 등, 사업의 위탁 대행(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재원의 조성, 수익사업, 재정지원, 회계연도(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사업계획 및 결산, 공유재산 사용 등, 보고 및 검사 등, 공무원의 파견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6. 1.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6. 1. 19.
	의 결 일 자	2026. 1. 2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 및 신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 성)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2명을 “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 (임 기) 위촉일로부터 4년(연임불가)
- (기 능)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6. 1.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6. 1. 19.
	의 결 일 자	2026. 1.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6. 2. 27.		공 포 번 호	제5965호

제안이유

- 2026.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에 따른 정원 조정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변경(안 제2조)

: 2026.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 총수 변경: 4,611명 ⇒ 4,671명(60명 증원)

- 교육전문직원 정원: 474명 ⇒ 534명(60명 증원)

- [별표 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현행			조정			증감		
	총계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총계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총계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총 계	4,611			4,671			60		
정 무 직 계	1	1		1	1				
교 육 감	1	1		1	1				
특 정 직 계 (교육전문직)	474			534			60		
장학관·교육연구원 (4급 상당 이상)	38	23	15	38	23	15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36			496			60		
일 반 직 계	4,116			4,116					
3 급	3	3		3	3				
3 · 4 급	2	2		2	2				
4 급	23	22	1	23	22	1			
5급 이하 소계	4,076			4,076					
전문경력관소계	12			12			0		
연 구 직 계	15			15			0		
연 구 사 소 계	15			15			0		
별 정 직 계	5			5			0		
5급상당 이하 소계	5			5			0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강태창·진형석 의원 (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6. 1. 1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6. 1. 28.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6. 2. 27.	공 포 번 호	제5966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이중언어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연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2036 전주 하계올림픽 · 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6. 1. 1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6. 1. 19.
	의 결 일 자	2026. 1. 2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하계올림픽 · 패럴림픽」 대회는 전 세계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스포츠 대회로, 개최 도시는 교통 · 문화 · 관광 등 인프라 개선과 함께 경제 활성화,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종합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 패럴림픽」 대회 유치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전북의 글로벌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전북 대도약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개최계획서 제출에 앞서 대회 유치 동의에 관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대회개요

- 명 칭 :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 대회기간 : 2036년 7월 25일 ~ 9월 7일 중(30일간)
  - (올림픽) 2036. 7. 25. ~ 8. 10.(17일간) / (패럴림픽) 2036. 8. 26. ~ 9. 7.(13일간)
- 대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및 연대도시
  - (연대도시) 서울, 광주, 충북 충주, 대구, 전남 고흥, <sup>축구에선</sup>대전, 수원, 용인, 천안
- 규 모 : 206개국, 선수단 16,000명
- 총사업비 : 6조 9,086억 원

- 전북특별자치도 총 소요예산액 : 2조 7,634억 원

계(100%)	국비(9%)	도비(40%)	조직위원회(51%)
6조 9,086억 원	6,204억 원	2조 7,634억 원	3조 5,248억 원

※ 기재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는 총사업비의 40% 이상 부담  
향후 위의 동 규정에 의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최계획이 확정될 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회종목 : 33개 종목(정식 31, 선택 2)

- (정식종목) 골프, 근대5종, 농구, 7인제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복싱, 사격, 사이클링, 서핑, 수영,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 승마,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철인3종, 체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펜싱, 필드하키, 핸드볼
- (선택종목) 야구/소프트볼, 브레이킹

나. 필요성

- ①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상생 도모
  - 지방도시 최초의 하계올림픽 개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맞닿아 높은 상징성을 가지며, 대회를 통해 지역발전 기대
  - 전북과 연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시설 활용, 저비용·지속가능 올림픽을 개최하여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산업 발전 촉진
- ② 미래 올림픽 스포츠 도시 조성
  -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인지도 제고, 스포츠에 대한 대중 관심 촉진, 지속적인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전북을 글로벌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
  - 국제수준 경기시설의 사후활용(레거시) 계획을 전제로 도시브랜드와 산업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며, 신재생에너지 기반 운영으로 친환경·지속가능 대회 구현
- ③ 국가 브랜드 및 전북의 국제적 위상 제고
  -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2015 광주 U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7 충청권 U대회에 이어,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로 국가 브랜드 향상
  - 올림픽을 통해 전북의 문화·자연·산업을 전 세계에 알려 전북도민의 자긍심 고취, 국제적 인지도와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글로벌 관광·투자 거점으로 도약

##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명연·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6. 1. 16.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6. 1. 19.
	의 결 일 자	2026. 1. 2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6. 2. 27.		공 포 번 호	제5963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여 도민의 실내 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로 함.
-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
- 다. 적용대상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5조)
- 라. 실태조사 규정 신설(안 제6조)
- 마.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
- 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 신설(안 제9조)
- 사.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11조)
- 아.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15조)
- 차. 그 밖에 내용에 따른 조문 위치 조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진형석 의원(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6. 1. 1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6. 1. 19.
	의 결 일 자	2026. 1.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6. 2. 27.		공 포 번 호	제5967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가.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나.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출 자	강태창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6. 1. 1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6. 1. 19.
	의 결 일 자	2026. 1. 26.	심 사 결 과	보류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전국을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여, 대한민국을 재도약으로 이끌 전략으로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함.
- 나.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물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도, 전국적인 고압선 계통선로 반대운동을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난제가 많이 남아 있어서 국가는 새로운 대안 지역을 찾아야 할 시점임.
- 다. 용인반도체 2단계 사업(삼성전자)은 360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고용효과가 192만명으로 48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거대한 국책사업으로, 이를 유치하면 전북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라. 특히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자원을 지역 산업에 우선 투입하고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지산지소(地產地消)’의 원칙을 첨단 산업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함.
- 마. 이에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가 새만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및 유치활동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서난이·최형렬 의원 (찬성의원 6명)		제 출 일 자	2026. 1. 1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6. 1. 19.
	의 결 일 자	2026. 1. 2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6. 2. 27.		공 포 번 호	제5960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여 공공기관의 도민복지 증진 및 공익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의 범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다. 정원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라. 노동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과 노동이사의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마. 노동이사의 권한 및 책임과 의안 심의·의결 시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 바. 노동이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사. 노동이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염영선 의원(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6. 1.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1. 2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1. 26.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여 권력 독점 및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
- 2026년 1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윤석열의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정의 실현을 위한 마땅한 조치로 사법부는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며, 엄정한 판결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박용근·권요안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6. 1.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1. 2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1. 26.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가. 치매 문제는 개인을 넘어 한국의 사회·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할 제도적 기반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나.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임의후견제도는 사전적 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공증·등기 절차와 높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도입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활용이 극히 저조하여 제도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
- 다. 향후 치매 환자와 치매 머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매 발병 이전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산과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의후견제도의 절차 간소화, 공공 지원 확대 및 체계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활성화가 필요함
- 라. 이에 치매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치매 머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임의후견제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함임

## 석면건축물 철거 전 위해성 관리·유지보수 예산 국비 지원 및 소량 폐석면 처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오현숙·강동화·나인권·윤수봉 황영석·서난이·국주영은·정종복 최형열·권요안 의원		제 출 일 자	2026. 1.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1. 2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1. 26.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흡입 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함.
- 정부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석면안전관리법」을 근거로 석면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등에 대한 해체·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수십만동 이상의 석면건축물이 잔존하고 있음.
- 환경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3~’27)에서 석면건축물의 정의를 50㎡ 이하까지 확대하여 석면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함. 석면건축물 관리 미흡 사례로 인한 국민 불안에 대하여 지도·점검 강화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해성 평가와 손상 보수 등에 대한 실습형 교육 도입 등을 통해 관리체계 고도화가 필요함.
- 위해성 평가 후 법에 따른 조치없이 방치되는 건물로 인해 석면에 노출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철거 전까지 유지보수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전북자치도는 자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석면 비산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석면건축물의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 또한 지방재정의 한계로 추진이 어려움.
- 따라서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실효성 있는 석면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철거비용과 철거 전 위해성 평가를 위한 석면 유지보수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 결의안

제 출 자	강태창·윤수봉·장연국·강동화 김정기·국주영은·최형열·김희수 권요안·전용태·김대중·김명지 정종복·이병도·박정희·김동구 염영선·진형석·나인권·윤정훈 의원		제 출 일 자	2026. 1. 2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1. 2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1. 26.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일극 집중’ 전략은 국가 인프라를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시켜 단일 취약 지점을 초래하고, 재난이나 전력·용수 공급 차질 발생 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
- 새만금 등 전북은 재생에너지 잠재력, 대규모 가용 부지, 안정적인 용수 공급 여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지산지소(地產地消) 원칙’에 입각한 RE100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최적의 입지임
- 이에 탄소중립과 글로벌 공급망 기준에 부합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국가 반도체 전략의 핵심 거점인 새만금 등 전북 유치를 강력히 촉구·결의하려는 것임

##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 출 자	윤수봉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6. 1. 2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도지사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 제43조,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출 석 일 시 : 2026. 03. 17.(화) 14:00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 03. 18.(수) 10:00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03. 19.(목) 10:00 (제4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 03. 27.(금) 14:00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출석대상자 :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 출석요구이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강동화·국주영은 의원 (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6. 1. 2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며,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파괴하여 선량한 의료인이 피해를 보고 있어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조속한 근절이 필요함.
- 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 금액이 2025년 11월 기준 약 2조 8,849억 원이나, 장기화되는 수사기간(평균 11개월) 동안 증거인멸,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8.84%에 불과함.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므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보험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책무가 있음.
- 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피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 전문성,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시스템, 행정조사 경험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음.
- 라.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함.

## ‘청곱창김’ 수산물 원료 인정 및 산업화 보장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강태창 의원(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6. 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최근 고군산군도의 신성장 동력인 ‘청곱창김’ 이 제도적 사각지대와 경직된 행정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음.
- ‘청곱창김’은 기존 품종보다 고수온에 강하고 식감이 우수하여 기후 위기 시대 군산 어민들에게는 유일한 생존 대안이자 고소득 전략 품목으로 자리 잡았음.
- 그러나 관련 부처는 이를 ‘중국산 단김’ 과 유전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종자로 규정하고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어, 그동안 현장에서 품종을 순화시키고 양식 기술을 정립해 온 어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음.
- 바다 수온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과 양식은 국가적 과제임. 이에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군산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수산물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청곱창김’ 의 제도권 안착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임.

##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정기·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13명)		제 출 일 자	2026. 2. 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과잉 구조를 개선하고 밀·콩·가루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자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 정책을 신뢰한 농민들은 콩·가루쌀 재배 전환에 적극 참여해왔으나, 그러나 2026년도 예산 추계 과정에서 콩·가루쌀 지원 면적 축소가 검토되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수급조절용 벼가 신규 지원 대상으로 논의되는 등 당초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움직임이 나타나 농업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다. 농업은 작목 전환에 따른 초기 투자와 매몰 비용이 큰 장기 산업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농정은 정부 정책을 믿고 재배 전환에 나선 농민들에게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전가하고 농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큼
- 라. 이에 농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농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임

##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임종명 의원(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6. 2. 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단 조치로 도입되었으나 도입 후 16년이 지난 지금, 경기 변동과는 무관한 상시적 행정절차로 고착화되었으며, 예산의 ‘효과적 집행’ 보다 ‘속도전’에 치중함에 따라 지방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그리고 지역 건설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음.

나.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가 사업 유형별·지역 여건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신속집행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실적 위주의 단기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성과·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방식으로 전환, 또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집행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하고자 함.

##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임승식 의원(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6. 2. 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자원 순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 현장은 여전히 막대한 양의 농산부산물이 제도적 보호와 활용 체계 없이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음.
-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폐기물로 분류하고, 이를 사료, 비료, 식품, 의약품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법체계는 농산부산물의 특성과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산업·도시 중심의 폐기물 관리 기준을 농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농산부산물은 유기성 자원으로서 비료·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이오에너지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농산부산물의 순환자원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상 식물성 잔재물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 농산부산물의 순환자원 인정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 농산부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슬지·강태창·김정기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6. 2. 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새만금 개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 국책사업이지만,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경우 조성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활용 성과가 없고, 지역 내에서 기존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지난 2024년 국토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내 산업용지 조성 현황보다 4.5배 이상 높은 용지 수요가 있어, 새만금 내 토지 조성 계획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함.

##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권요안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6. 2. 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6. 2. 6.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6. 2. 6.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지난 22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은 양적 측면에서 약 46배 규모로 성장 하였지만, 관련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경우 여전히 최저 임금, 고용불안, 경력 미인정, 과중한 업무부담, 권익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전담인력들의 경우 이직이나 퇴사가 비일비재하고,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 또한 저하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관련 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됨.

###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 1. 접수현황

○ 분야별

(2026. 1. 1. ~ 2. 6.)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의지	환경	산업경제	문화체육관광	농축수산	교통	도시계획	건설	건축	기타
금회	29		1		19	1			1			2		5
2026년누계	29		1		19	1			1			2		5

○ 제출자별

구분	계	인원별					기관단체
		소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회	29		29				
2026년누계	29		29				

#### 2. 처리현황

구분	계	처리별					처리중
		소계	처리	불수리	취하	타기관이송	
금회	29	29	24			5	
2026년누계	29	29	24			5	

###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2대)

(2022. 7. 1. ~ 2026. 2. 6.)

구분	위원회별	접수	처리상황				비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까지	소 계	<b>320</b>	<b>320</b>	<b>320</b>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4	14	14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22	22	22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19	19	19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20	20	20			
	교육위원회	78	78	78			
	기 타	167	167	167			
금회	소 계	<b>29</b>	<b>24</b>	<b>24</b>			<b>5</b>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21	16	16			5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2	2	2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교육위원회	1	1	1			
	기 타	5	5	5			
누계	소 계	<b>349</b>	<b>344</b>	<b>344</b>			<b>5</b>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4	14	14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43	38	38			5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21	21	21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20	20	20			
	교육위원회	79	79	79			
	기 타	172	172	172			

##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1. 202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26. 1. 26. ~ 2026. 2. 6.)

기관별	구분	요구	제출	미제출	비율(%)	비고
	계	금회	52	52		100
누계		1,287	1,287		100	
전북특별 자치도	금회	38	38		100	
	누계	980	980		100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금회	14	14		100	
	누계	307	307		100	

### 2. 202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26. 1. 26. ~ 2026. 2. 6.)

기관별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계	금회	52	15	19	3	9	5	1
누계		1,287	290	236	250	282	187	1	41
전북특별 자치도	금회	38	9	15	3	8	2	1	-
	누계	980	254	190	216	235	54	1	30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청	금회	14	6	4	-	1	3	-	-
	누계	307	36	46	34	47	133	-	11

### 3. 제12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22. 7. 1. ~ 2026. 2. 6.)

구분	요구	제출	미제출	비고
합계	2,414	2,414		
전북특별자치도	1,846	1,8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68	568		

### 4.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22. 7. 1. ~ 2026. 2. 6.)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계	2,414	496	498	475	474	407	3	61
전북특별 자치도	1,846	433	406	421	415	124	3	44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568	63	92	54	59	283	-	17

### 5.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22. 7. 1. ~ 2026. 2. 6.)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계	5,404	1,224	1,105	1,033	1,168	801	7	66
전북특별 자치도	4,309	1,112	918	918	1,072	233	7	49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1,095	112	187	115	96	568	-	17